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단일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그 구성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본

조례에 충실한 조례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타조례로 이관하여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면개정하였고, 2.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였으며, 3.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